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880호)에 대한 의견서

사외이사 선임 예외 법제화 및 인원에 관한 기준 강화,  
적용대상범위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0호)에 대한 의견서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80호)의 내용	3
2.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	3
1) 사외이사 선임 예외를 법제화하는 점에 관하여	3
2) 사외이사 인원에 관한 강화된 기준의 법제화, 적용대상범위 조정에 관하여	5
3. 결론	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0호)에 대한 의견서

##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80호)<sup>1</sup>의 내용

- 본 개정안은 첫째,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이 제1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그 예외를 정한 현행 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 08. 31.로 일부개정) 제34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의 내용으로 수용,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둘째, 현행법은 위와 같은 조 제1항에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강화된 규제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동조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그 강화된 규제의 적용대상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 강화된 규제의 적용대상 역시 대통령령이 아닌 법으로 정하고, 이 때 대통령령의 내용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기준을 '1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

### 1) 사외이사 선임 예외를 법제화하는 점에 관하여

- 현행 상법 제542조의 8은 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구 증권거래법 내에 존재하던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현행 상법에 거의 그대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규정입니다.<sup>2</sup> 구 증권거래

1 이하 '본 개정안'이라 합니다.

2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사외이사의 선임) ①증권회사(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8.1.20.]]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6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①법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증권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증권회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증권회사를 제외한다.[개정 2005.1.27,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6.4.1]]

1.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영업중 일부만을 허가받은 증권회사
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3. 정기주주총회일부터 6월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이 확정된 증권회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증권회사

법 역시 법에서 사외이사의 선임이 의무화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으로는 그 예외를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 상법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규정된 현행 상법을 살펴보면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회사에 대하여서는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첫째,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따르게 되는 점에서는 불이익 제재의 구성요건을 의회가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되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부당하고,
- 둘째, 시행령의 내용이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있는 상장회사(제2호), 신규상장회사(제3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호), 해산결의회사(제5호) 등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 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법기술상 '등'으로 규정할 경우 그에 선행하여 적어도 두 개의 병렬적인 기준을 두어 해석상 '등'에서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현행 상법은 '등'의 앞에 자산규모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 '등'의 해석에 어떠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현행 시행령 조항의 위법적 소지를 해소하고, 법이 위임입법에 관한 한계를 지키고 명확성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사외이사제도 도입 의무화의 예외를 법에서 직접 규정

5. 파산선고를 받은 증권회사

6. 해산을 결의한 증권회사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사외이사의 선임)**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3.12.31., 2004.1.29] [[시행일 2004.7.1.]]

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3.28, 2004.1.29, 2007.7.19] [[시행일 2008.1.20]]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3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등)** ①법 제191조의1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7.7, 2005.1.27]

②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1.27]

토록 하는 본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2) 사외이사 인원에 관한 강화된 기준의 법제화, 적용대상범위 조정에 관하여

### ● 시행령 내용의 법제화에 관하여

-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은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 사외이사의 인원을 3명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규모 상장회사의 범위를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규모 회사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첫째,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 조항은 과태료 제재의 근거가 되므로 구성요건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위임입법의 원칙상 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그 내용을 위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본 조항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범위는 입법부가 정할 수 없는 정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그때그때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정해야 할 내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대상의 범위를 의회가 직접 정하는 것이 의회주의 원칙에 보다 충실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내용을 법으로 편입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대규모 상장회사의 범위 확대에 관하여

- 현재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의 독단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sup>3</sup> 그러나 적용대상 상장회사들이 점차 법에 따라 사외이사 제도를 갖추어나가고 있는 추세이고<sup>4</sup> 사외이사의 자격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sup>5</sup>, 사외이사 제도를 통하여 향후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비단 대기업의 것만이 아니라,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에도 마찬가지로, 견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커다란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이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문화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지 아니하고, 다른 한편 장기적·잠재적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바,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중견기업 단계에서부터 기업건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화된 사외이사 기준을 적용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범위를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회사로 확대하는 본 개정안


3 SBS CNBC, 「사외이사, 좀 더 늘리자... 과반의무 확대안에 재계 '노발대발」, 2012-06-21,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58767>

4 헤럴드경제, 「코스닥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비율 32%...법적 요건 크게 상회」, 2012-12-13, <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121213000649>

5 한겨레 뉴스, 「대기업 사외이사 10명중 3명은 대주주·회사·경영진과 이해관계」, 2013-02-2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5935.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5935.html)

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3. 결론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현행 상법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제1항을 상법 제542조의8제1항에 포함시켜 사외이사 선임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힙니다. 

---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3-05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0호)에 대한 의견서**

발 행 일 2013. 03. 18

발 행 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

담 당 백운광 민생경제팀장 02-723-5052 aiman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7001-060

주 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